

#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

의안  
번호

1874

제출년월일 : 2009. 9. 3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
  - 서해안 개발에 따른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,
  -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하에 광역행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.

## □ 구성 개요

- 협의회명 :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
- 대상도시 : 안산시, 평택시, 시흥시, 화성시, 김포시
- 구성형태 : 협의회(시장단), 실무협의회(담당 실·과장 및 담당)
  -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
    - 인원구성 : 5개 市 자치단체장(회장 1, 부회장 1, 위원 3)
    - 권한 : 안전 토의 및 표결권(공통사항 - 전원합의제)
  - 실무협의회
    - 인원구성 : 5개 市 담당 실·과장
    - 권한 :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및 결과 보고(협의회)
- 협의회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제6조 ~ 제19조)

## □ 주요 협의 내용

-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
- 서해안 관광 및 휴양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
- 서해안권 서비스산업 등 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
- 서해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틀 마련에 관한 사항
- 서해안권의 해양물류산업 성장에 관한 사항
- 서해안권을 동북아지역의 경제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
- 기타 본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 □ 추진경과

- '09. 5. 10 : 도지사 서해안권시장협의회 구성 지시
- '09. 5. 28 : (가칭)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구성제안(화성시)
- '09. 6. 5 : 1차 실무협의회 개최
  - 협의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객관성 논의
  - 협의회 성격 및 기능에 대한 논의
- '09. 6. 15 : 안산시 참여 결정
- '09. 7. 27 : 2차 실무협의회 개최
  - 기본규약안 마련(조직, 기능, 운영, 실무협의회, 자문위원 등)

## □ 향후계획

- '09. 10월 중 :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창립총회 개최
- '09. 10월 중 : 경기도에 협의회 구성 보고(화성시)

## □ 협의회규약 : 불 임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 임

#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경기 서해안 연안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는 안산시, 평택시, 시흥시, 화성시, 김포시 5개 시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제4조(사무소의 위치 등) ① 협의회 사무소는 화성시에 둔다.

② 사무소의 소재지인 화성시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·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·관리한다.

제5조(의무) 위원은 상호간의 신의 도모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
제6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·조정 및 처리 한다.

1.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
2. 서해안권 관광 및 휴양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
3. 서해안권 서비스산업 등 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
4. 서해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틀 마련에 관한 사항
5. 서해안권의 해양물류산업 성장에 관한 사항
6. 서해안권을 동북아지역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제7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- ③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,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제순에 따른 선임 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시 부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.
- ⑥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 연임할 수 있다.

- 제8조(협의방법)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제1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동 안건의 합의결정은 위원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며, 참석위원 일부 자치단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- 제9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, 3월과 9월 셋째주 수요일로 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소속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회장은 협의안건 중 상급기관(도·중앙부처)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'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' 명의로 건의문을 작성 제출한다.

제10조(사무처리)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이 속한 시의 업무담당 실·과장 빛 담당(팀장)으로 한다.

제11조(회의록 작성)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,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자료제출 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,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3조(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)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(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동수의 인원을 추천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
1.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
2.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
3.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

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,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6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 한다.  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·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실·과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 
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  
④ 협의회 간사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제17조(분담금 등) ① 협의회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.  
② 일반회비는 연 120만원(월 10만원)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, 협의회 운영 등 일반적 경비에 사용한다.  
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·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.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자치 단체가 분담하며,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.

제18조(회계보고 및 결산)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 
②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리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9조(규약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협의회 소속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0조(보칙)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계법령발췌서】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09.4.1] [법률 제9577호, 2009.4.1, 일부개정]

###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2절 행정협의회

- 제152조 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- 제153조 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제154조 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협의회의 명칭
  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  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  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  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  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- 제155조 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 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조정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  
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157조 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 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2.29>  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 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08.12.31] [내통령령 제21214호, 2008.12.31, 타법개정]

제95조 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

제96조 (협의회 사무소의 위치)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(이하 "중심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에 둔다.

제97조 (협의회 구성 보고)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
3. 구성목적
4. 구성일자
5. 협의회의 규약 사본

제98조 (회장)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.

제99조 (회의)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.

- ② 정기회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·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-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.
-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·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100조 (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, 지방의회 의원,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01조 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102조 (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)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2.29>

1. 설립취지
2. 협의체의 명칭
3.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창립총회의 회의록
5. 대표자·임원 및 회원의 성명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 
2008.2.29>